

9급에서 5급 승진 10년 이내에도 가능해진다

– 5급 이하 일정비율(10%내외) 특별승진 실시,
역량검증 통해 5급으로 승진임용 –

I. 개요

1. 평균 27년 걸리던 9급 공무원의 5급 승진*이 10년 안에 가능해진다.

- (1)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는 승진 적체로 침체된 공직사회에 활력과 경쟁력을 높이는 ‘특별승진 활성화 지침’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 (2) 이에 따라 각 부처에서 자율적으로 실시됐던 5급 이하 승진의 문제점이 개선되고, 성과가 우수한 7, 9급 공무원의 상위직급 진출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조직 활력을 높이고 근무의욕 촉진을 위해 특별승진제도를 도입(1981년), 운영했으나, 추상적 선발기준, 공정성 우려 등으로 활용이 미미, 2014년 5급 이하 우수성과자 특별 승진 291명(전체 승진인원의 2.2%)
9급 → 5급 평균 27년 소요, 이 영향으로 고위공무원 중 7·9급 공채 출신은 10%미만

2. ‘특별승진 활성화 지침’ 주요 내용

(1) 5급 이하 승진예정인원의 일정비율(10% 내외) 특별승진을 실시한다.



- 상위직급에 결원이 없어 우수성과자가 특별승진을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 특별승진 소요(T/O)를 사전에 확보해 일반승진심사 전 특별승진을 실시하게 하고, 필요시 예상결원(5급)으로 심사를 실시, 추후 우선 임용토록 했다.
 - 아울러, 특별승진 기준의 사전 설정 및 공개 등을 통해 공정성과 투명성, 조직 내 수용성을 높인다.
- (2) 특별승진 기준을 구체적이고 명확히 제시*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이 특별승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했다.
- 규제개혁위원회 관리과제 담당해 개선완료, 정부업무평가 과제 수행해 우수기관 선정에 기여, 국민신문고 민원 만족도 평가 우수, 업무 관련 부처 주관 경진대회 입상, 대한민국공무원상 수상 등

(3) 초급관리자 역할을 수행하는 5급 특별승진은 관련 역량을 갖췄는지를 검증해 임용한다.

- 기관별 인사업무 특성에 따라 역량평가(Assessment Center)를 실시중인 기관은 기존 제도를 활용해 검증하고,
 - 역량평가를 운영하지 않는 기관은 보고서 기획 및 역량면접을 활용해 검증한다.
- ※ 5급 공통역량, 평가기법, 모의과제 등이 수록된 매뉴얼 배포 예정

(4) 이밖에 각 부처에 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을 부여하고, 인사혁신처는 이를 지원한다.

- 각 부처 사정에 맞춰 특별승진 비율과 방법을 정해 제도를 시행하고,
- 인사혁신처는 부처별 운영현황을 점검해, 불공정한 운영, 대외적으로 성과를 인정받은 우수성과자의 심사 누락 등, 필요시 개선을 권고해 특별승진제도가 정책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참고 특별승진 관련 주요 개선사항

◇ 능력과 자질을 갖춘 실무직 공무원의 특별 승진을 통해 승진 적체로 침체된 공직사회 활력 및 경쟁력 제고

	5급 ← 6급	6급 ← 7급	7급 ← 8급	8급 ← 9급
현행	9년 이상	7년 이상	6년 이상	4년 이상
	27년 이상			
↓	5급 ← 9급			
개선	10년 이내에도 가능			

	As-Is (현행)	To-Be (개선)
인원(비율)	부처 자율로 결정(2.2%)	일정비율 특별승진 실시(10% 내외)
승진소요 최저연수*	(9급→5급) 9년	폐지(15, 11, 18)
절차	내부적으로 대상자 결정 역량검증 없이 특별승진	경쟁 및 외부심사 통한 대상자 결정 역량평가 등 검증 후 특별승진
요건	추상적 (국정과제 추진, 규제완화 등)	구체적 (규제위원회 관리과제 담당해 개선안료, 정부업무평가 과제 수행해 우수기관 선정에 기여, 국민신문고 민원 만족도 평가 우수, 업무 관련 부처 주관 경진대회 입상, 대한민국공무원상 수상 등)
관리	X	부처별 운영현황 점검 및 개선 권고

* 상위 계급으로 승진하기 위해 재직해야하는 법정 최소 근무연수(공무원임용령 제31조)